

2025년 하반기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채용 공고

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8월 4일
국무조정실장

1. 선발예정인원(3개 분야, 총 33명)

지원코드	채용분야	선발인원	근무예정부서(근무지)
인턴A	행정·법무	23명	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(세종특별자치시)
인턴B	외국어·국제	4명	
인턴C	홍보	6명	

※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(다른 코드 중복지원 불가)

※ 근무예정부서는 희망부서, 인턴지원서 등을 고려하여 배치 예정

가. 근무조건

- (신 분) 청년인턴(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 - (계약기간) 채용일('25.9월경) ~ '25.12.31
 - (보 수) 월 2,096,270원 내외 ※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
 - (근무시간) 주 5일, 40시간
 - (후생복지)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- ※ 출·퇴근 지원 및 숙소 지원 없음

나. 주요 업무 내용

지원코드	채용분야	담당업무
인턴A	행정·법무	○ 정책분야별 국내·외 동향 파악, 자료 조사 ○ 규제혁신 과제 검토 및 관련 법령 조사 ○ 청년정책 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업무 지원 ○ 대국회 업무 지원 및 관련 사례집 정리 ○ 정부 주요 법률안 관리 및 판례·결정례 분석 ○ 조세심판청구서 관리, 선결정례·판례 조사 등 심판행정 지원
인턴B	외국어·국제	○ 국내·외 ODA 동향 모니터링 및 ODA 관련 자료 조사 ○ 탄소중립 데일리 브리핑 작성 ○ 해외 의회 정당제도 및 관계 법령 조사
인턴C	홍보	○ 국정과제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○ 청년의날 행사 지원, 청년정책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○ 국제개발협력행사 업무 보조

※ 주요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시 세부 조정될 수 있음

2.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

가. 응시자격요건 :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으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의 연령(19세 이상 34세 이하)에 해당하는 사람
 - 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「병역법」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
 - ▶ 군복무기간 1년미만: 1세, 1년이상~2년미만: 2세, 2년이상: 3세 연장
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
【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(가족 채용 제한)】

1. 소속 고위공직자
2.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3.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4.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
- 「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」 제29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※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준용

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나. 응시제한 : '2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 참여자

- 응시자는 응시제한요건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,
 - 기간제근로자 등 청년인턴 이외의 신분으로 중앙행정기관 근무 이력이 있을 경우, 경력증명서를 함께 첨부

다. 가산요건 : 서류전형에만 적용 [원서접수 마감일 기준]

-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서류전형 시, 만점의 10% 또는 5% 가산

※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(국가보훈부 상담센터 ☎1577-0606)

※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
【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】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
3. 시험방법

가. 서류전형

- 자격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- 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,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

※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,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

※ 서류전형 기준 : 1. 인턴지원서, 2. 가산요건

나. 면접전형

※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‘정책제안서’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※ 정책제안서 주제 : 청년정책 제안 또는 지원한 분야의 정책·사업·제도개선 아이디어 등

※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

※ (평정요소)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
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'하'로 평정하거나,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'하'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하며,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

※ "상"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"중"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

4. 채용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모집공고	'25.8.4.(월)~'25.8.14.(목)	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,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
원서접수	'25.8.4.(월)~'25.8.14.(목)	■ 국무조정실 인사과 채용담당자(전자우편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5.8.21.(목)	■ <u>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</u> 게시
정책제안서 제출	'25.8.21(목)~'25.8.26(화)	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
면접전형	'25.8.28.(목), 29(금)	■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개인에게 별도 통보 예정
최종합격자 발표	'25.9.3.(수)	■ <u>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</u> 게시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, 포기,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,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순으로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. 응시원서 제출

- 제출기간 : '25. 8. 4.(월) ~ '25. 8. 14.(목) 18:00

- 제출방법 : 관련 서류는 **e-mail로만 접수**(확인메일 개별발송예정)

- e-mail: opminsa@korea.kr

※ e-mail 제목은 반드시 "성명(지원코드)"로 기재 * 예시: 홍길동(인턴A)

※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('25.8.14.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6. 제출 서류 안내

※ 제출서류는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(모아찍기 금지)

※ 제출서류 중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

※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함께 첨부

서류	비고
I. 공통사항(필수제출서류)	
1. 응시원서 1부(별지 1호)	· 자필 서명 필수
2. 청년인턴 지원서1부(별지 2호)	· A4 1매 이내로 작성
3. 정책제안서 1부(별지 3호)	·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정책제안서 제출기한에 맞춰 제출 · A4 1매 이내로 작성
4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(별지 4호)	· 자필 서명 필수
5.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 (별지 5호)	· 자필 서명 필수
6.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(별지 6호)	· 자필 서명 필수
7. 주민등록초본 1부(등본이 아님에 주의)	·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 사항 기재되도록 발급
8. 가족관계증명서 1부	
9. 고용보험 자기이력내역서 1부	· 근로복지공단(https://total.comwel.or.kr) 발급
II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함)	
9. 가산요건 관련 증빙서류	· (취업지원) 국가보훈부 발행 증명서 등

7. 유의사항

-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,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,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,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국무조정실 인사과(☎044-200-28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8. 참고(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)

- ①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' 접속
(<https://total.comwel.or.kr>)

 근로복지공단

Korea Workers' Compensation & Welfare Service



일하는 삶에 안심과 안정을 드리는,

근로복지공단

대표 홈페이지

근로복지공단 관련 소식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홈페이지입니다.

[바로가기](#)

고용·산재 보험
토탈 서비스

고용·산재보험 관련한 각종 만원을 신청(신고)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
[바로가기](#)

근로복지넷

각종 근로자 복지사업 (생활안전자금, 임금채권사업 등)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
[바로가기](#)

퇴직연금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/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

[바로가기](#)

공단 병원

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사이트입니다.

[바로가기](#)

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-0075(통화로 발신자 부담) Copyright © 2023 by 근로복지공단 All Rights Reserved.

- ② 개인 → 일반근로자 선택 →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

☐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**①**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합니다.

사업장

사무대행

의료기관

개인

☒ 일반근로자 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·예술인 ☐ 산재근로자 ☐ 대리인(간이대지급금/심사청구/구상금협의조정/최초요양급여신청)·유족

주민등록번호

123456

.....

☒ 개인정보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

공동인증서 로그인

간편인증 로그인



-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(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등록번호) 또는 간편인증(주민등록번호)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 간편인증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 - 간편인증 사업장: 카카오톡, 통신사PASS, 한국정보인증(삼성PASS), KB국민은행, NHN페이코, 신한은행, 네이버, 토스,뱅크샐러드, 하나은행, 농협, 드림인증
 - 간편인증 요청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간편인증 화면의 안내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인증서암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시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여러개의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구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기 바랍니다.(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 60분 동안 화면 이동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됩니다.)
-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하시려면 **개인 > 일반근로자** 또는 **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·예술인** 선택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토탈서비스는 모바일 환경(모바일 웹, 앱)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
③ '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' 선택

근로복지공단
고용·산재보험 토달서비스

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**개인**

[일반근로자] 박정연님 민원접수/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/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

자주 찾는 서비스

토달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

개인

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

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개인별 부과고지보 험료 조회

One-Click 산재상당 및 신청

심사청구서 작성

공지사항

알림창

연간 정기직업으로 인한 토달서비스 일시중지 계획 알림(2025.01.04) 2024-12-31

산재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 (재)인증 결과 알림 2024-12-26

(거울철 비상진료 한시적용-대상기관)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 안내 2024-12-20

(거울철 비상진료-한시적용) 거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재보험 적... 2024-12-20

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2025-01-02

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2025-01-02

2025년 최저임금

시간급 **10,030** 원

월 환산액 **2,096,270** 원

(주 40시간 기준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
본의사항은 국번 없이 **1350**

최저임금위원회

④ 보험구분 중 '고용' 선택 → 조회구분 중 '상용' 선택 → 조회

⑤ 직종포함여부 '예' 선택 → '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전체 이력 인쇄)' 신청 선택

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Home > 증명원 신청/발급 >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메뉴숨김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해

+ 마이메뉴 추가

*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.

본 자료는 고용·산재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,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·산재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· 보험구분 ☐ 산재 ☒ 고용

· 조회구분 ☒ 상용 ☐ 일용

조회

이력내역서 발급

직종포함여부 ☒ 예 ☐ 아니오

① 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[자격관리 상세이력]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.

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개별사업장)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

신청

메일전송

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

신청

메일전송

고용/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선택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

신청

메일전송